#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460

발의연월일: 2025. 3. 28.

발 의 자:김 윤·한준호·권칠승

정을호 · 이수진 · 고민정

김동아 · 조승래 · 강경숙

최기상 · 김우영 · 이정문

윤종오 • 박은정 • 강득구

전종덕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 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 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 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
  - 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 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한 경우
  - 다.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스 중단 및 의약품 공급중단 또는 대 규모의 혈액수급 부족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정상적인 보 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
  - 라.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히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

제4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방법·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란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
	<u>다.</u>
	<u>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u>
	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
	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
	건 위기상황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u>장으로서 위기경보를 발령</u>
	<u>한 경우</u>
	다. 전국적 규모의 의료서비
	스 중단 및 의약품 공급중
	단 또는 대규모의 혈액수
	급 부족사태 등으로 인하
	여 국민이 정상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u>상황</u>

<신 설>

라.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히 대응체계를 갖추어야하는 상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

제28조의2(국가 보건의료 위기상 황 대응)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 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 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 보건 의료 위기상황 대응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 실태조사 결과 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 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내용·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